

제2절 저소득 주민보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자활 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며,

-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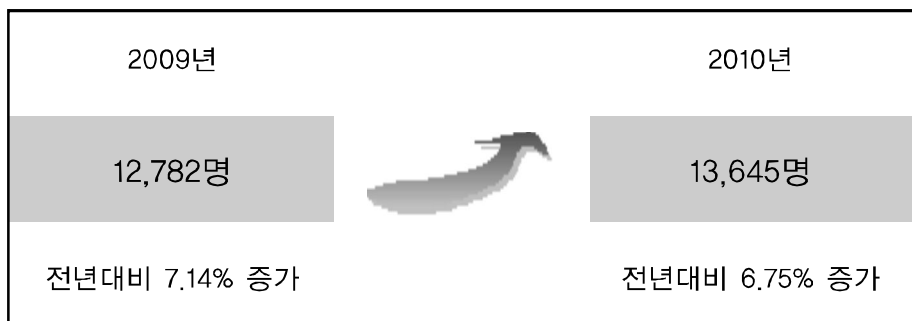
- 주거급여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 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 또한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도 강구하였다.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우리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0년 12월말 현재 7,581세대 13,645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부평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수급자가 많고, 매월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전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정보호대상 수급자가 특히 많은 편이며,

○ 글로벌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대란 등으로 수급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로 저소득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10. 12. 31 기준)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개소	인원(명)
2010년말	7,581	13,645	6,533	11,840	1,048	1,637	17	168
2009년말	7,052	12,782	6,062	11,161	990	1,526	4	95

○ 북한이탈 및 사할린 특례수급자 변동현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2009년말		2009년말		2010년말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북한이탈주민	447	615	456	720	526	848	
사할린영주귀국자	356	555	352	546	354	540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실적

우리구는 2009년도에는 연인원 187,351명에게 34,454,777천원의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한 것에 비해 2010년도에는 총 급여 지원액이 9.23% 증가한 37,636,313천원을 연인원 147,419명에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액

(단위 : 명/천원)

계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교복비지원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147,419	37,636,313	141,016	35,812,238	5,566	1,568,876	323	160,034	514	95,165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신청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신청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다.

가. 조 건

○ 대출액 : 보증금의 70%범위 내

(단위 : 천원)

구 분	대출가능금액	전세보증금 한도	대출비율
저소득가구	56,000	100,000	70%
다자녀가구	63,000	110,000	70%

- 대출이율 : 연 2%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에는 연 3%,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 연 2.5%)
- 기 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나. 신청자격

- 1) 10,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3자녀 이상 세대 11,000만원 이하)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저소득주민으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 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 3)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6개월이상 부양가족 전원 무주택)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다. 선정제외대상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형 이상 자동차 소유자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중형자동차 : 1,600cc 이상 ~ 2,000cc미만
- 2) 부동산 소유자
- 3)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계약 갱신자(단, 2009. 4. 1이후 대출추천 신청한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는 대출 허용)
- 4)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5)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 6)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 자매 등 가족관계인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7)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8)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9)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

- 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10)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11)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라. 2010년도 추진실적

대출추천	대출실행	비 고
160건/2,978,100천원	146건/2,689,800천원	

3.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하고자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신청자에 한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추천하고 있다.

가. 신청조건

- 1)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지녀야 한다.
 - 가) 남동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나) 국가유공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 다)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마) 시장이 인정하는 자
- 2) 선정제외대상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나)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미만인자
 - 다) 생업용, 보철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

나. 2010년 추진실적(접수)

(단위 : 건)

계	만수주공	삼산주공	갈산주공	연수주공	연수시영	선학시영
510	377	21	13	40	28	31

4. 의료급여사업

1977. 12. 31. 법률 제3076호로 의료급여사업이 시행되면서 국가재정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등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1)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속한 세대
- 국가유공자 :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로 분류된 세대, 8등급으로 분류된 세대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3등급 내지 8등급 세대중 만성·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한 월평균 소득 생활등급 9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 자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한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이 재 민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입양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2중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1종									2종	
	수급자	군입대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유족	시설수급자	입양아동	수급자	군입대자
14,570	7,318	50	588	1	43	1,057	7	173	56	5,147	130

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기준(진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

1) 1종(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 2007. 7. 1. 시행)

- 외래진료시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약국 500원
- 제외대상 : 임산부, 18세미만인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 2종 : 국가부담 85%, 본인부담 15%

마. 진료절차

1) 지참물 :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 ##### 2) 절 차 : 1차, 2차, 3차 3단계로 하며 진료기관의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희망 진료기관에 제출

바. 의료급여 사업

1)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로 본인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의료지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절 차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대상자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자료확인후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 2010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비 고
본인부담환급금	7,384천원	2,056명	국비 : 80%, 시비 : 20%	

2)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하여 의료급여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절 차

- 보상금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금액 (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인 후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 초과금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원(1종), 매 6개월간 60만원(2종)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전액을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인 후 본인부담 초과금 지원

○ 2010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비 고
본인부담보상금	18,673천원	1,774명	국비 : 80% 시비 : 20%	
본인부담초과금	12,843천원	87명		

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납부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지원금액 및 방법

1인당 매월 6천원이 지급되며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하였다.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보장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도말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내역 및 잔액 등 정산내역을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장 기관에 통보 후 보장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정산내역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건강생활유지비	219,821천원	6,140명	국비:80%, 시비:20%

4)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요양비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지원구분

복막 관류액 구입비, 자동복막 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정산소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 임대료,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지급요건 및 절차

구 분	대 상	제출서류	지급절차	지 원 액
복막관류액 구입비	복막관류액을 구입.사용 만성신부전 환자	처방전 세금계산서 청구서	관련 서류 관할 보장 기관 제출 ↓ 지급 여부 결정후 요양비 지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고시 건강보험약가 기준액 범위 내 실구입가 지급
소모성 재료비	자동복막투석시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만성신부전 환자			1일 5,640원
산소치료 요양비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결정후 요양비 지급	1종: 120천원 2종: 102천원
출산비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 에서 출산한 자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 증빙서류, 요양비명세서, 청구서		자녀당 250천원

○ 2010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소모성재료비	3,028천원	15명	국비 : 80%, 시비 : 20%
산소치료 요양비	9,726천원	83명	국비 : 80%, 시비 : 20%

5)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등록장애인인 의료급여대상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였다.

○ 지원절차

의료급여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하고 구청에 신청 후 적격 여부 판단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하여 구비서류 (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장구영수증,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보장구 구입비를 청구하면 보장구별 지원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 2010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2,996원	131명	국비 : 80%, 시비 : 20%

○ 사후관리

- 내구연한(최고 6년)내에 1인당 1회 지원하며, 지원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 보장구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6)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의료급여2종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비용 중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불해 줌으로써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한다.

○ 지원절차

의료급여 2종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 대불신청하면 병원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지원하며, 대불금 지원후 3개월 경과후 3개월마다 최대12회까지 분할 납부한다.

○ 사후관리

- 대불금채납자에게 독촉고지서 월 1회 발송
- 대불금채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결손처분)는 연 1회 실시
- 상환의무자는 주소이전시 전입지에서 대불금 상환

7)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징수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상해외인 및 의료급여기관(병원)의 정산심사, 원외처방, 중복청구로 인한 부담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

○ 2010년 처리현황

(단위: 명/천원)

구 분	부당이득현황		부과액		상환액		결손등		체납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부당이득금	46	188,223	24	48,768	23	45,827	6	2,926	41	188,238

○ 사후관리

- 부당이득금체납자 독촉고지서 월1회 발송
- 부당이득금체납자 전수조사 연1회 실시
- 상환의무자는 주소이전시 전입지에서 부당이득금 상환

8)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질병, 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정보, 상담서비스 및 지원을 연계하여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 지원에 기여한다.

○ 대 상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 이용자 중 건강관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결과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전년도 의료급여일수 과다이용자

○ 처리절차

직접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목적, 방법, 기간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최종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례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과다의료 기관방문, 과다한 약제비용,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올바른 의료이용 행태를 교육하고 수행기록지 작성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건강관리실 등을 연계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2010년 처리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의료급여사례관리	176건	266건	508건	919건	

※ 연간 사례관리 목표인원 : 사례관리사 1인당 240명

9)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연장승인 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여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대 상

11개 고시질환으로 455일을 초과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455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자발적 참여자

○ 지원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선택병의원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기준에 해당시 해당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기관에 적용 통보서를 발부하고 선택병의원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 2010년 처리현황

구 분	건 수	자발적 참여자	조건부 승인	비고
선택병의원제	343건	66건	277건	

10) 의료급여 상해외인 관리

의료급여 대상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아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있어 수급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의료 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의료급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처리절차

- 100만원 이하 : 시군구 조사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조사 대상자를 통보받아 진료기관 및 대상자를 조사하여 상해외인 여부를 판단하여 공단통보후 부당이득금 결정시 환수한다.

- 100만원 이상 : 건강보험공단 조사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선조사하고 보장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조사내역서를 통보받아 상해외인 여부를 판단하여 공단에 재통보한 후 부당이득금 결정시 환수한다.

○ 2010년 처리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건 수	통보금액	정당급여	부당이득
100만원이상	402건	983,928	884,341	34,930
100만원이하	282건	206,583	198,600	6,552

11) 의료급여 중복청구 관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이중청구된 자료를 확인하여 의료급여적용 여부 결정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의료지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처리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수급권자의 중복 청구가 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 각 의료기관으로 중복 청구된 내역에 대하여 통보하고 20일이내에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후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적용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환수 및 적용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내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 2010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건 수	정당급여	환수대상
중복청구	431	259	172

○ 기 타

이의신청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판단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복청구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도록 한다.

사. 향후 전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급여사업 홍보를 통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으며, 사례관리를 통한 올바른 의료이용 안내로 적정한 의료혜택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5. 행려자 관리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써 공공구호기관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한다.

가. 관련법령

- 1)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 제2조
- 2)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나. 행려자 처리 절차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조치

2)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

다. 2010년 추진실적

(2010. 12. 31 기준)

구 분	건 수	예 산	비 고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3	4,190천원	장제비 및 공고비

6. 자활급여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가. 의의 : 조건부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조건부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 지급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나. 근로능력자(조건부수급자) 판정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무능력자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 규정)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

- 는 자(진단서상 반드시 요양·치료·재활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입산부, 공익근무요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다. 조건부수급자 유형

취업 대상자	· 즉시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개인 창업이 가능한 자 ·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
비취업대상자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자활 공동체 참여, 공공근로기회 제공 등이 필요한 자

라. 2010년 추진실적

구 분	예 산	집 행 액	참 여 자
자활근로사업	2,841,525천원	2,564,628천원	305명

7. 저소득층 생업자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하고자 한다.

○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요건

- 무보증 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1인(1,000만원당 1인)

○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원한도)

○ 2010년 추진실적

구 분	신 청	추 천	비 고
2010	2건/32,000천원	1건/12,000천원	

8.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증가에 비례하는 장려금 지급 및 본인 저축에 대한 매칭 지원으로 탈수급을 위한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사업기간은 2010. 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취업수급자 가구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로서 지원조건은 일정기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이며, 근로소득장려금 및 매칭액(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지원한다.

○ 2010년 추진실적

구 분	예 산	집 행 액	참 여 자
희망키움통장	153,056천원	129,505천원	86명